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649 판결 [점유회수청구]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천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2. 5. 3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이 유

### 1.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9. D종교단체(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E사 주지로 임명받아 2016. 5. 11.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E사 사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20. 7. 8. 무력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D의 총무원장 겸 E사의 주지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배임수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20. 4.경 총무원장에서 사직하였고, 2020. 5. 15. D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아 D 승니법 제4조에 따라 승니로서 분한을 상실하여 E사 주지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피고 C이 2020. 6. 10. E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가 2020. 9. 22.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고, 피고 B가 2020. 9. 23. E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점유를 침탈하지 않았다.

### 2. 판단

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된다(민법 제204조 제1항).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46년 창립되어 1969년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등록을 한 F단체 소속 비법인사단으로,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중앙총회를, 종무 행정전반의 총괄기관으로 총무원을, 종단의 대표자로 총무원장을 각 두고 있고, E사는 D 소속 종단으로 1988. 6.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실, E사의 주지이던 원고는

‘G으로부터 H사 주지로 재임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028)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8노2856) 및 상고(2020도1752)가 모두 기각되어 2020. 4. 9.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 4.경 D에 총무원장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D은 2020. 6. 2. 원고를 E사 주지직에서 해임한 후 2020. 6. 10.

피고 C을 E사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2020. 9. 22. 사임하자 2020. 9. 23. 피고 B를 E사 주지로

임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7. 8.경에는 수감 중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별지